
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함께가는 희망한국

VISION 2030

 <b>보건복지부</b> <small>MINISTRY OF HEALTH &amp; WELFARE</small>	<b>보도자료</b>	<b>배 포 일</b>	<b>12월4일</b>	<b>매 수</b>	<b>총5매</b>	
		<b>보도일시</b>	<b>12월 5일(화) 석간</b>			
	<b>의약품 정책팀</b>	<b>팀 장</b>	<b>송 재 찬</b>	<b>전 화</b>	031)440-9111~3 지역번호 없이 129	
		<b>서 기 관</b>	<b>이 승 훈</b>	<b>E-Mail</b>	kfdalee@mohw.go.kr	

## "크라툼" 등 4종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관리

### <주요내용>

- 보건복지부는 금년 12월 4일부터 디메칠암페타민, 5-메오-티프트, 2씨-아이 및 크라툼 등 4종 물질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마약류 대응물질로 오·남용되고 있어 이들 물질을 “향정신성의약품”으로 지정·관리한다고 밝혔다
- 보건복지부는 “디메칠암페타민”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남용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·요청함에 따라
  - 그간 “중앙약사심의위원회”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」 관련 규정에 따라 “향정신성의약품”으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
- ※ 향정신성의약품(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):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< 참고 1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종전	신설							
<p>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</p> <p>[별표3] 법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제2조제3항 관련) 1~24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</p> <p>[별표3] 법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제2조제3항 관련) 1~24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30 920 1382 1137"> <tr> <td data-bbox="730 920 799 987">25</td> <td data-bbox="799 920 1086 987">크라툼(Kratom)</td> <td data-bbox="1086 920 1382 987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730 987 799 1137">26</td> <td data-bbox="799 987 1086 1137">5-메오-딤트 (5-Meo-DIPT)</td> <td data-bbox="1086 987 1382 1137">5-methoxy-N, N-diisopropyl tryptamine</td> </tr> </table>		25	크라툼(Kratom)		26	5-메오-딤트 (5-Meo-DIPT)	5-methoxy-N, N-diisopropyl tryptamine
25	크라툼(Kratom)							
26	5-메오-딤트 (5-Meo-DIPT)	5-methoxy-N, N-diisopropyl tryptamine						
<p>[별표4] 법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제2조제3항 관련) 1~24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[별표4] 법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제2조제3항 관련) 1~24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46 1424 1382 1776"> <tr> <td data-bbox="746 1424 799 1675">25</td> <td data-bbox="799 1424 1129 1675">디메칠암페타민 (Dimethylamphetamine)</td> <td data-bbox="1129 1424 1382 1675">1-phenyl-2-dimethylaminopropane 는 2-dimethylamino-1phenylpropane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746 1675 799 1776">26</td> <td data-bbox="799 1675 1129 1776">2씨-아이(2C-I)</td> <td data-bbox="1129 1675 1382 1776">2,5-dimethoxy-4-odophenethylamin</td> </tr> </table>		25	디메칠암페타민 (Dimethylamphetamine)	1-phenyl-2-dimethylaminopropane 는 2-dimethylamino-1phenylpropane	26	2씨-아이(2C-I)	2,5-dimethoxy-4-odophenethylamin
25	디메칠암페타민 (Dimethylamphetamine)	1-phenyl-2-dimethylaminopropane 는 2-dimethylamino-1phenylpropane						
26	2씨-아이(2C-I)	2,5-dimethoxy-4-odophenethylamin						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## < 참고 2 >

### □ 약리작용 및 남용현황

#### ① 디메칠암페타민

- 메스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 신경 흥분작용이 있으며 오·남용시 혈압상승, 흥분, 불면증, 편집증적 망상 등의 효과 있음.
- 과거에는 메스암페타민 제조시 생산되는 불순물질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내 마약조직들이 당국의 에페드린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디메칠암페타민을 제조·유통
- ※ 04.7월 중국산 디메칠암페타민 500g을 국내로 밀반입 기도한 한국인 2명 체포

#### ② 5-Meo-DiPT 및 2C-I

-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의 중간정도의 환각작용이 있음.
- 일반 화학실험실에서 제조·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거래, 일명“차세대 엑스터시”라 불리며 북미와 유럽지역의 클럽마약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으며 알약 형태로 제조되어 유통
- 2C-I : 미국은 기존 마약류인 2C-B의 유사물질로 간주, 통제하고 있으며 영국·독일·프랑스 등 유럽국가 대부분에서 마약류로 규정
- 5-Meo-DiPT : 미국에서는 '03년 4월부터 마약류로 규정하고 제조유통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·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도 규제

#### ③ 크라툼

- 태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‘미트라지나’ 나무의 잎사귀 성분이고 흡입시 아편유사 작용이 있어 마취제 및 환각물질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
-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마르고, 피부가 검어지고 구갈, 변비 및 빈뇨가 있음
- 금단증상으로 근육 및 관절통, 적대감 경직성 사지 움직임의 증상을 보임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□ 외국의 규제 사례

품명	관리 현황	비고
디메칠암페타민	미국 - 통제물질 I (1978년), 마약류(1990년) 일본 - 각성제원료물질	
5-Meo-DiPT	미국 - 마약류 유럽(영국, 독일, 덴마크) - 마약 류로 규제	
2C-I	미국 - 통제물질 I 영국, 독일, 프랑스 - 마약류로 관리	
크라툼	호주, 태국 - 통제물질로 관리	

< 참고 3 >

□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전후 관리제도 비교

구분	종전(지정전)	신설(지정후)
구입	- 인체용의약품 :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구입 - 동물용의약품 : 동물병원 또는 동물약국에서 임의 구입	- 인체용의약품 : 종전과 같음 - 동물용의약품 :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동물병원 또는 동물약국에서 구입
관리	- 없음	- 조제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 - 재고량이 관리대장과 상이한 경우, 취급업무정지의 행정처분 - 도난·분실, 파손 등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 -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승인받은 경우에만 가능
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의 구입	- 처방전 없이도 5일의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	- 처방전 없이 구입 불가능
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	- 없음.	- 법제2조제4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: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

<<보도시 출처표기 바랍니다>>

		<p>하의 벌금</p> <p>- 법제2조제4호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</p> <p>:</p> <p>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</p> <p>하의 벌금</p>
저장기준	<p>- 없음.</p> <p>※ 별도의 저장기준 등 관리 의무 사항이 없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물질에 대한 오·남용가능성이 있음</p>	<p>- 별도의 보관시설(캐비닛)에 보관</p> <p>※ '디메칠암페타민', '5-메오-덱트', '2싸-아이' 및 '크라툼' 등은 국내에 의약품으로 허가된 바가 없는 물질임</p>